

## 신구대 조표

규정명 : 장대현중고등학교 기숙사 운영규정		비고
현행	제 · 개정(안)	
<p><b>제9조(기숙사 관리요원)</b> 기숙사 관리요원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학생생활지도와 학습지도를 위해 사감교사 1~2인을 둔다. (단, 학교 운영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)</p> <p>2. 위원장은 사감교사 외의 관리인을 둘 수 있다.</p> <p><b>제13조(선발인원)</b></p> <p>1. 기숙사 정원은 20명으로 한다.(남학생 8명, 여학생 12명)</p> <p>2. 기숙사 입사는 입학순으로 입사 우선권을 부여한다.</p> <p>3.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하여 선발위원회에서 입학학생을 조정한다.</p> <p><b>제21조(사감교사의 근무)</b> 사감교사는 학교 교직원복무규정을 준수하여 근무한다. 단, 별도의 규정이 있을 시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이를 적용한다.</p> <p>1. 사감교사의 근무 시간은 17:00 ~ 다음날 08:30까지로 한다.</p> <p>2. 사감교사의 휴무일은 주 1회로 일요일 09:00 ~ 월요일 17:00까지로 한다. (단, 부득이한 경우 휴무일을 조정할 수</p>	<p>1. <u>학생생활지도와 학습지도를 위해 사감교사 1~2인을 둔다. (단, 학교 운영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)</u></p> <p>2 &lt;변동없음&gt;</p> <p>1. <u>기숙사 정원은 20명으로 한다(남학생 10명, 여학생 10명).</u></p> <p>2,3 &lt;변동없음&gt;</p> <p>&lt;신설&gt; <b>제17조(수용인원)</b></p> <p>1. <u>기숙사 수용인원은 22명(남자 10명, 여자 12명)으로 한다.</u></p> <p>2. <u>기숙사 방 배정은 수용인원을 고려하여, 학생방, 게스트룸 등으로 운영한다.</u></p> <p>&lt;17조 신설에 따라 이후 항목부터 18조~로 개정&gt;</p> <p>1 &lt;변동없음&gt;</p> <p>2. <u>사감교사의 휴무일은 주말(토요일, 일요일)로 하며, 정규근무시간은 최대 주 40시간으로 한다.(단, 부득이한 경우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.)</u></p>	

규정명 : 장대현중고등학교 기숙사 운영규정		비고
현행	제·개정(안)	
<p>있다.)</p> <p>3. 사감교사는 학생자치회의를 통해 수립된 의견을 학생생활지도에 반영하여야 한다.</p> <p><b>제26조(취침점호 이후)</b></p> <p>1. 취침점호가 끝나면 전체 소등을 실시한다.</p> <p>2. 야간 자율학습은 24시까지 실시하며 시험기간에는 당직 선생님의 허락하에 새벽 1시까지 추가 학습을 할 수 있다.</p> <p>3. 추가 학습자의 경우 오후 5시 전까지 담임 선생님께 추가학습 확인을 받고, 당직 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4.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습공간을 분리시킨다.</p> <p><b>제29조(비상대피훈련)</b> <u>학생들은 분기 1회 이상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한다.</u></p> <p>1. 지역내 관공서(경찰서, 소방서)와 연계하여 사고예방 교육 실시</p> <p>2. 기숙사 자체적으로 상황을 부여 하여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한다.</p>	<p>3. <u>사감교사의 휴무일에는 대체인력을 운영하도록 한다.</u></p> <p>4. <u>사감교사는 학생자치회의를 통해 수립된 의견을 학생생활지도에 반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b>제27조(취침점호 이후)</b></p> <p>1 &lt;변동없음&gt;</p> <p>2. <u>추가 학습자의 경우 오후 5시 전까지 담임 선생님께 추가학습 확인을 받고, 당직 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3. <u>야간 자율학습은 취침점호 이후 추가 학습신청자에 한하여 최대 24:00까지 실시하며, 시험기간에는 당직 선생님의 허락하에 새벽 1시까지 추가학습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4 &lt;변동없음&gt;</p> <p><b>제30조(비상대피훈련)</b> <u>학생들은 매학기 1회 이상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한다.</u></p> <p>1,2 &lt;변동없음&gt;</p>	